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93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김승수·강선영·서지영

박성민 • 권영진 • 박충권

신동욱 • 박정하 • 진종오

조승환 • 한기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'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'(이하 "융자 사업"이라 함)을 진행해온 바 있음.

용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,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대출계정의 설치 등) 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.

② 대출계정의 수입·운영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1조의2(대출계정의 설치 등)
	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
	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
	설치한다.
	② 대출계정의 수입・운영・관
	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<u>령으로 정한다.</u>